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64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법률안의 취지 및 구성	3
1. 법률안의 입법 배경	3
2.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4
3.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7
V. 조문별 검토	12
1. 총칙	12
가. 목적규정	15
나. 정의규정	17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21
2. 산림치유 기본계획의 수립 등	23
가. 산림치유 기본계획·지역계획·시행계획 및 기초조사	28
나. 협력체계의 구축	30

다. 산림치유정보체계, 관련 정보 수집·분석 활용	31
3. 산림치유산업의 진흥	34
가. 산림치유산업의 육성	37
나.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보급	38
다. 창업지원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39
라. 산림치유업의 등록 등	40
마. 지역산림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립	43
바.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의지정	43
4. 치유의 숲 조성 등	45
가. 치유의 숲 조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치유의 숲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치유의 숲 타당성 평가	51
나. 치유의 숲 등록	51
다. 입장료 등의 징수	52
라. 치유의 숲에서의 금지행위, 치유의 숲의 위탁	53
5. 산림치유사	54
가. 현황	59
나. 산림치유사 자격에 관한 사항	59
다. 산림치유사의 업무, 산림치유사의 배치 등	60
라. 사회서비스 등과 연계 제공	61
마. 산림치유사 양성기관	62
바. 산림치유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63

사. 산림치유사의 보수교육	63
6. 보칙	65
가. 유사명칭 사용금지	67
나. 재정지원	68
다. 수수료	69
라. 청문	69
마. 권한 등의 위임·위탁	70
바.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71
7. 벌칙	72
가. 벌칙	73
나. 과태료	7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8.

다. 회 부 일 : 2024. 11. 19.

II. 제안이유

고령사회의 진전, 수명연장,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림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피톤치드, 음이온 등 산림치유자원과 산림에서의 활동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증진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고 있으나, 치유 수요 증가에 따라 무분별한 자연자원 기반의 유사 치유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우려가 있어, 국가 차원에서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기반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산림치유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간 주도 산업으로의 발전이 필요함에 따라 산림치유 산업의 육성, 지원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 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산림치유산업 기반 조성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산림의 다양한 자연요소를 활용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산림치유의 정의와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 등을 정의하고 산림치유를 기반으로 하는 산림치유산업을 정의함(안 제2조).
- 다. 산림치유 활성화와 산업진흥을 위한 산림치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산림치유 활성화와 산업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마. 산림치유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산림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과 창업지원,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 지정 등(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 사. 치유의 숲 조성, 타당성평가, 치유의 숲 등록, 입장료 등의 징수, 치유의 숲 위탁 등(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 아. 산림치유 전문인력인 산림치유사 자격 관련, 양성기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 자. 유사명칭 사용금지, 권한 등의 위임·위탁(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 차. 벌칙 및 과태료(제41조 및 제42조)

IV. 법률안의 취지 및 구성

1. 법률안의 입법 배경

기대수명 증가 및 인구고령화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만성질환과 난치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질병의 치료보다 예방에 중심을 두는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자연치유(naturopathy, naturopathic medicine) 등 보완대체의학(compli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음.

특히 산림을 건강증진 및 질병치유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산림치유의 순기능에 관한 임상연구들이 발표됨에 따라 2010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이라 함)에 산림청장 및 공·사유림 소유자가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산림치유지도사 제도 도입, 2023년 산림치유 연구개발 및 창업지원 규정 마련 등 산림치유에 관한 제도화가 발전하였음.

그런데 산림치유는 초기에 자연치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독자적인 근거 법률이 마련된 치유농업 및 해양치유와 달리 「산림휴양법」 내의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되어 관련 서비스 활성화 및 산업 육성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정안은 산림휴양법으로부터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치유 관련 규정들을 분리·이관하는 한편,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업 진흥에 대한 국가의 책무,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대국민 서비스 기반 마련 등 산업진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산림치유서비스 공급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임.

2.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인구고령화 및 수명연장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산림에서의 활동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고 있어 산림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치유 수요 증가에 따라 무분별한 자연자원 기반의 유사 치유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국내외 치유산업의 확장에 따라 산림치유 역시 양적 확장과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산림치유 분야의 민간산업을 발굴하여 진흥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산림치유

를 활성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건강·여가·환경 등 개인의 삶의 ‘웰니스(wellness)’에 대한 가치가 중시되며 2023년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산림휴양·복지활동’ 경험이 있을 정도로 산림분야에서도 ‘산림휴양’, ‘산림치유’가 각광받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둘째, 산림치유는 △인지능력 향상, △건강증진, △정서안정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어 일반인뿐 아니라 치매환자, 임신부, 질병 회복기 환우, 우울증 환자, 감정노동자 등 수혜범위가 폭넓으나 아직까지 연구대상 질환자의 규모확보, 산림치유자원 간 복합적인 연계작용 분석 등에 대한 연구 분석 등은 미흡한 상황이므로 과학적 연구개발의 근거가 되는 법 기반 마련이 필요함

셋째, 국내·외적으로 치유산업이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산림치유 역시 양적 확장과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는바 산림치유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법정계획 및 지원책을 마련 등 민간 산림치유 산업이 확장·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지 이미 산림치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산림휴양법」을 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률은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는바, 그에 따라 법체계가 복잡해지고 일관성이 없게 되면 입법의 체계 정당성을 저해하게 되고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됨.

반면, 서로 다른 사안 또는 규범적 접근 방법이 다른 내용을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단일 법률 내부에서 제도 간 상호 모순이 발생하거나 체계성이 저하됨. 또한 하나의 법률에 지나치게 방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가 어려워질 수 있음.

제정안은 「산림휴양법」에서 “산림치유”와 “치유의 숲”의 정의, 산림치유지도사,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창업지원 관련 규정을 이관하고, 산림치유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 산림치유 산업 진흥 관련 규정 등을 보완하는 내용인바(후술하는 3.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부분 참조), 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산림치유에 관한 사항이 「산림휴양법」에 포함되어야 할지 별도의 제정법으로 마련되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단일 법률 체계 안에서 특정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정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 전체적인 법체계의 균형이 깨지고 다른 분야에 대한 형평성이 부각될 수 있고, 특정분야에 관한 개별적인 보호나 체계 정비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어 해당 분야에 대한 제도 보완

을 기존 법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 다른 규정과의 형평성이나 체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분야의 제도를 위한 개별법의 제정이 가능한바,

「산림휴양법」상의 다른 산업에 비하여 산림치유 산업을 특별하게 육성할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산림치유 분야에 관한 개별적인 체계정비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에 따라 제정법으로 추진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본칙 7개의 장, 42개의 조 및 부칙 10개의 조로 구성되는데, 본칙은 총칙, 산림치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산림치유산업의 진흥,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사, 보칙 및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정안은 현행법에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자체의 의무조항이 없어서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하는 내용임.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업진흥을 위해 국가·지자체가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마련케 함으로써, 산림치유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둘째, 제정안은 산림치유분야 민간산업의 발굴과 진흥을 촉진하는 내용임. 현행 「산림휴양법」 상 산림치유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같은 법 제11조의6(산림치유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과 제11조의7 (산림치유 관련 창업지원 등)에서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국가와 지자체가 산림치유서비스 산업의 확장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서비스 개발·공동연구·기업육성 등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림치유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산업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제정법은 직접적으로 산림치유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현행 「산림휴양법」은 제1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취득 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국민이 다양한 고품질 산림치유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 기반의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우수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치유사(산림치유지도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넷째, 제정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대국민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현재 산림치유 서비스 제공과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보다 효과 높은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분야의 의·과학적인 근거기반 데이터 축적과 근거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위한 시스템적 기반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구성 체계 및 조문별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산림치유 관련 기존 산림휴양법과 제정 법률 비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산림치유”, “치유의 숲”의 정의	제2조(정의) 산림치유, 산림치유서비스,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 치유의 숲, 산림치유사, 산림치유산업 정의를 추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림치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산림치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산림치유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기초조사 등)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9조(산림치유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제10조(산림치유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
	제3장 산림치유산업의 진흥
	제11조(산림치유산업의 육성)
제11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제12조(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등)
제11조의7(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제13조(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제14조(산림치유업의 등록 등)
	제15조(지역산림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립 등)
	제16조(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지정)
	제17조(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지정취소)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등의 조성 등	제4장 치유의 숲 조성 등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제18조(치유의 숲 조성)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21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20조(치유의 숲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21조(치유의 숲의 타당성 평가)
	제22조(치유의 숲 등록)
제21조의5(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제23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제24조(치유의 숲에서의 금지행위)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제25조(치유의 숲의 위탁)
제3장 산림치유지도사 등	제5장 산림치유사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제26조(산림치유사)
	제27조(산림치유사 결격사유)
	제28조(자격증의 발급)
	제29조(산림치유사의 업무)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제30조(산림치유사의 배치 등)
	제31조(사회서비스 등과 연계 제공)
제11조의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제32조(산림치유사 양성기관)
제11조의5(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	제33조(산림치유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34조(산림치유사의 보수교육)

제7장 보칙	제6장 보칙
	제3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재정지원)
제31조의2(수수료)	제37조(수수료)
제33조(청문)	제38조(청문)
제34조(권한의 위임)	제3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7장 벌칙
제42조(벌칙)	제41조(벌칙)
제43조(과태료)	제42조(과태료)
	부칙
	제1조~제10조

※ 제14조(산림치유업의 등록)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준용

V. 조문별 검토

1. 총칙

제정안은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산림치유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산림치유, 산림치유서비스,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 산림치유사 등 산림치유서비스 관련 법률 용어를 정의하는 한편,

산림치유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산림치유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정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상 제2조(정의)중 산림치유 관련 조문을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과 해당 조문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제정안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비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산림치유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치유”란 심신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 등을 활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림치유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치유자원의 발굴·활용, 프로그램 개발·제공, 시설 운영 등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치유자원”이란 산림치유에 활용할 수 있는 수목·목재, 향기, 경관, 소리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말한다. 4. “산림치유시설”이란 산림치유자원을 갖추어 산림치유서비스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5.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가. 치유의 숲 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호에 따른 휴양·치유숲길 다. 그 밖에 산림치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산림치유사”란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산림치유산업”이란 산림치유시설을 조성하거나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및 그 밖에 산림치유와 관련하여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치유 서비스와 산림치유산업의 진흥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산림치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산림치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림치유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가. 목적규정

고령사회의 진전,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산림치유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유사 치유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기반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산림휴양법」에는 산림치유의 대상과 서비스 범위, 국가의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산림치유 활

성화와 산림치유산업 육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산림치유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제정안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필요성은 이해되고 산림청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은 산림치유 활성화와 산림치유산업 기반 조성을 중간목표로,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발전을 최종목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림치유자원 활용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법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정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도록 법문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목적규정에서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라고 규정하여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을 해당 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정의규정

안 제2조는 「산림휴양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림치유 및 치유의 숲 등 용어들을 이관하여 정리하는 한편, 산림치유서비스,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 산림치유사 등 산림치유서비스 체계화를 위하여 일부 용어의 뜻을 새롭게 정의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제정안의 정의규정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2조제1호는 산림치유의 정의를 “심신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 등을 활용하는 활동”으로 규정하여, 「산림휴양법」에서 산림치유를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규정한 것과 다른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한다”는 치유(治癒)¹⁾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산림휴양법」에 따른 정의의 형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산림치유의 정의를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 등을 활용하여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1) 치유의 의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특별한 조치없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치유(healing)라고 하며, 약물이나 기타조치를 통하여 본래의 모양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치료와 차이가 있음. 다만, 치유는 환자의 입장에서 병이 회복되는 것이고, 치료는 의료인 즉 치료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회복이나 인공적 회복이나 모두 치유라고 할 수 있음. 한편, 치유(cure)는 사람을 괴롭히던 병적상태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의미, 즉 완치를 의미함(지제근, “치유, 치료, 요법”, 의협신문, 2005.02.17. 참조).

수 있겠음.

유사입법례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치유²⁾,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치유자원법”)에 따른 해양치유³⁾ 등도 「산림휴양법」에 따른 산림치유와 유사한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둘째, 안제2조제2호는 산림치유서비스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치유자원의 발굴·활용 등 유·무형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림치유와 서비스의 합성어로서 가지는 문리적 의미인 “산림치유를 제공하는 활동”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산림휴양법」에 따른 산림치유서비스는 “산림치유시설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해양치유자원법」에 따른 해양치유서비스는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되어 있는바,⁴⁾

-
- 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3)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산림치유시설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산림치유서비스”라 한다)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제정안의 산림치유서비스는 “산림치유자원과 산림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셋째, 안 제2조제3호는 산림치유자원을 “산림치유에 활용할 수 있는 수목·목재, 향기, 경관, 소리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의 요소를 모두 포괄할 수 있게 되어 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유사 치유서비스가 오히려 조장될 염려가 있어 보이므로 산림에서 유래되는 치유자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유사입법례로서, 「해양치유자원법」에서는 해양치유자원을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⁵⁾

넷째, 안 제2조제4호는 산림치유시설의 개념요소로 “산림치유자원을 갖추어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산림치유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산림치유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지 여부로 산림치유시설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음과 같다.

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5)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즉, 유사입법례인 「해양치유자원법」에서 해양치유시설을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⁶⁾

또한, 제정안은 산림치유시설에 「산림휴양법」 제22조의2제5호에 따른 휴양·치유숲길을 포함하고 있는데,⁷⁾ 휴양·치유숲길에서는 산림치유 외에 산림휴양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휴양·치유숲길을 산림치유시설에 포함하는 것은 「산림휴양법」에서 산림치유만을 이관하여 분법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보임.

즉, 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게 수정하는 방안으로는 「산림휴양법」상 휴양·치유숲길을 휴양숲길로 개정하여 산림휴양에 관한 요소만을 남기고, 제정안에서 치유숲길을 “산림에서 치유 등 건강증진을 하는 길”로 규정하여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림치유서비스 및 산림치유산업의 진흥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산림치유의 혜택을 누릴

6)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숲길의 종류) 숲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휴양·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림휴양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문화·휴양에의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⁸⁾ 산림치유 활성화에 관한 책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국민들이 산림치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으로 규정하고, 그 예시로 산림치유서비스와 산림치유산업의 진흥을 열거하고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산업을 진흥하는 1차적 목적이 국민이 산림치유 혜택을 향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의 기반 조성이라는 제정안의 목적규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산림치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정법을 따르도록 하여 제정법이 산림

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치유에 관한 일반법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안 제4조제2항은 산림치유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입법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안 제4조제2항과 같은 규정은 일반적으로 기본법에서 두는 규정인데,⁹⁾ 기본법은 주로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골격을 제시하고 이를 개별법으로 구체화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법이 아닌 제정안에 이러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9) 입법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음.

고용정책 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용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거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주거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산림치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정안은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치유 기본계획,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치유정책에 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산림치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산림치유 관련 정책수립 기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산림휴양법」상 산림치유에 국한하여 정책수립 기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은 없음.

【 제정안 제2장 규정 】

제정안
제2장 산림치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산림치유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산림치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림치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치유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치유에 관한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림치유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림치유자원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산림치유시설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림치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치유 관련 산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사회적·지역적·산림 환경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중 산림치유 관련 내용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 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

제정안

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

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산림치유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산림치유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산림치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정안
② 산림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초조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치유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산림치유시설의 조성, 산림치유산업 등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및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산림치유와 관련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 활성화, 산림치유산업 육성 및 산림치유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산림치유 관계 기관, 산림치유시설 운영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림치유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지역협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산림치유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서

제정안

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산림치유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치유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본계획 등 기본체계
2. 산림치유시설의 조성·운영 현황과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
3. 산림치유사 등 관계 전문가의 현황과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정보
4.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의 성과
5. 산림치유 창업 관련 데이터와 창업 지원 정보
6. 그 밖에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산림치유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 ① 산림청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치유서비스를 위하여 산림치유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처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운영 및 통합관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산림치유 기본계획·지역계획·시행계획 및 기초조사

안 제5조는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산림치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산림치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도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산림치유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안 제7조는 산림청장 및 시·도지사도 하여금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산림치유 실태 관련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산림청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과 기초조사 실시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제정안의 취지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도 하여금 산림치유 관련 행정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치유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법률에 명확히 하여 제정안의 입법목적에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으로 산림치유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제정안의 행정계획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5조는 산림치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산림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 제6조에서 산림청장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재원확보 노력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는 것과 부합하지 않아 보이고, 기본계획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통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5조제7항은 시·도지사가 수립·시행할 수 있는 지역계획의 명칭을 지역산림치유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 법령에 대한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기본계획, 안 제6조제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시행계획 등과 유사하게 “산림치유 지역계획”으로 자구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7조제2항은 산림청장에게 기초조사 실시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시·도지사의 기초조사 실시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권한에 대하여는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어 시·도지사의 지역계획 수립에 행정적 부담이 예상되므로 보완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8조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치유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산림치유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진청, 산림청으로 이루어진 치유정책협의체가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치유정책을 공유하고 치유정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별도의 법적인 근거는 없는 상황임.

또한, 산림치유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 등 지역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되고 있어 산림치유시설 운영기관, 지역주민 등으로 이루어진 산림치유지역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산림청 차원의 협의체와 지역단위의 협의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대국민 산림치유서비스 확대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안 제8조제1항은 산림치유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협의대상으로 산업계 및 학계를 포함하고 있는바,

해당 정책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대상을 협의대상으로 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의견수렴 또는 자문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산림치유정보체계, 관련 정보 수집·분석 활용

제정안은 제9조에서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치유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치유정책의 기본체계,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정보, 산림치유사 관련 정보,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성과, 산림치유 창업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0조에서 산림치유 정보 수집·분석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국·공립 및 사립 치유의 숲 운영기관별로 개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산림치유 관련 정보의 대국민 접근성이 낮아 맞춤형 산림치유 서비스에 한계가 있고 산림치유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산림치유의 효과는 인정받고 있으나,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향후 보건·의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산림치유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고 산림치유 관련 정보를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정보체

계의 구축하는 한편, 과학적 근거 기반 산림치유서비스를 위하여 산림치유 효과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9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성과를 포함하는 산림치유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면서, 제10조에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치유서비스를 위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의무를 규정하여 중복된 시스템 구축이 우려되므로, 하나의 조에서 규정하면서 관련 내용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9조제1항은 산림치유정보체계의 목적 중 하나로 산림치유 정보를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입법례¹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10조제1항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정보 수집 시책 수립·시행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바 관련 정보의 원활한 수집을 통한 내실 있는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유사입법례¹¹⁾에 맞추어 보완할 필요가

10) 경관법 제33조(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경관계획 수립, 경관 심의 등 경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경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경관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경관자원의 현황, 경관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계 기관 및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생략)

11) 해외건설 촉진법 제15조의7(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에 대한 전략

있을 것으로 보임.

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외공사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3. 해외공사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4. 해외공사 관련 인력 육성·관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④ (생략)

3. 산림치유산업의 진흥

제정안은 산림치유산업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산업의 육성,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지역산림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립 등 지원제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산림치유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산림휴양법」상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규정은 제11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과 11조의7(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임.

【 제정안 제3장 규정 】

제정안
제3장 산림치유산업의 진흥
제11조(산림치유산업의 육성)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치유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관련 제도 개선
2. 산림치유서비스 및 제품의 개발·홍보
3. 산림치유 관련 국내외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4. 산림치유업 및 연관기업의 발굴·육성
5. 그 밖에 산림치유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정안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산업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 활성화와 산림치유산업 진흥을 위하여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 및 산림치유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 내용, 지원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산림치유업의 등록 등) ① 산림치유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업의 등록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정안

제15조(지역산림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립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산림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산림치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산림치유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구역 내 산림치유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시행
2. 관할구역 내 산림치유 관련 사업 및 관련 산림치유산업에 대한 모니터링
3. 관할구역 내 산림치유 관련 정보공유 및 홍보 지원
4. 그 밖에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③ 시·도지사는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지정)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거나 개발·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산림치유프로그램에 대하

제정안
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산림치유프로그램에는 제5항에 따른 지정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3항에 따른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지정요건,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지정취소) ① 산림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7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지정취소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가. 산림치유평업의 육성

제정안은 제11조에서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치유평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현행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산림복지전문업을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는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 등이 있는데,

이중 산림치유와 연관된 산림복지전문업은 종합산림복지업과 산림치유업임.

2024년 9월 기준으로 종합산림복지업은 69건, 746명이, 산림치유업은 128건, 277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업의 범위와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치유산업에 대한 발굴과 관련 제도 도입 등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 의의를 찾을 수 있겠음.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치유산업은 ① 산림치유제품(생산(기획, 연구개발 포함), 가공, 유통, 판매, 소비 등의 가치사슬에 포함된 모든 업종), ② 산림치유서비스 관련 산업(산림치유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산림치유시설의 조성·운영 등을 영위하는 모든 업종)으로 구분하여 육성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나.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보급

제정안 제12조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치유 활성화와 산림치유산업 진흥을 위하여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등을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연구개발 성과 제고 및 성과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산림청장이 직접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제정안의 내용은 「산림휴양법」에서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는 규정(제11조의6¹²⁾)을 이관한 것으로 민간단체 등의 공동연구 지원과 산림청의 시범사업 추진근거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산림휴양법」에서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제정안에서 생략하고 있는데, 현행 「산림휴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 국민의 이해가능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더 적절해 보임.

다. 창업지원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제정안은 제13조에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치유 관련 창업,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동 제정안의 내용은 「산림휴양법」 중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12) 「산림휴양법」 제11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림치유정책
 2.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복지시설 내 산림치유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 산림치유 관련 기술
 3. 산림치유 관련 기술의 효과 검증
 4. 산림치유시설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하 “산림치유서비스”라 한다)
 5. 산림치유서비스의 품질관리,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치유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대한 규정(제11조의7¹³⁾)을 이관한 것으로 지원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추가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지원 대상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지원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추가하고 있음.

다만, 현행 「산림휴양법」에서 산림치유 관련 창업지원 내용을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전부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산림휴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 국민의 이해가능성 및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더 적절해 보인다는 점, 그리고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대상에 대하여 시행령에 백지위임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통제권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산림치유업의 등록 등

제정안 제14조는 산림치유업을 하고자 사람에 대하여 산림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산림치유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고, 등록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13) 「산림휴양법」 제11조의7(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 경우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창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우대할 수 있다.

“「산림복지법」”이라 함)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복지법」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등록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와 제25조¹⁴⁾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과 사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산림치

1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산림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소외자
2. 산림복지소외자의 친족
3. 산림복지소외자의 법정대리인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 등)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라 한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8. 2. 21.>
2.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현황
3.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실적 및 품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개의 내용·방법·절차, 공개내용의 수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유업의 등록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안 제14조제2항은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준용하는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산림복지법」과 그 시행령에서 산림복지전문업을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으로 정하고 있고,¹⁵⁾ 이들에 대한 등록제도를 「산림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 산림치유업에 대하여만 별도로 규정하고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및 종합산림복지업은 「산림복지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15)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산림복지전문업”이란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산림복지전문업)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림치유업: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치유(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치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도하거나 같은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업
2. 숲해설업: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업
3. 유아숲교육업: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업
4. 숲길등산지도업: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을 제공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업
5. 종합산림복지업: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가. 제1호에 따른 산림치유업

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

또한, 안 제14조제1항은 산림치유업을 하려는 자연인에 대하여만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법인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특별한 정책적 이유가 없다면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마. 지역산림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립

제정안은 제15조에서 시·도지사도 하여금 관할구역 내의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산림치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역산림치유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지원센터의 업무로 산림치유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시행, 산림치유 관련 사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 산림치유 관련 정보 공유 및 홍보지원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지역을 기반으로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림치유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보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바, 제정안은 이러한 역할을 맡기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됨.

바.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지정

안 제16조는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과학적 근거 기반의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효과가 검증

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검증된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우수산림치유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산림교육프로그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에 따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주제, 목표, 강사역량 등 표준화된 프로그램 운영기준 마련하여 고품질의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 분야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반면, 산림치유프로그램의 경우 지정 또는 인증 제도가 없으므로 제정안에서 고품질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그 명칭을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에서와 같이 인증으로 할지 지정으로 할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치유의 숲 조성 등

제정안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로 치유의 숲 조성계획 작성 및 승인·승인취소 등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한 등록,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치유의 숲에서의 금지행위와 치유의 숲의 조성·관리에 관한 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이와 관련하여 「산림휴양법」 상의 치유의 숲 조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산림휴양법」 제20조제1항에서 산림욕장 등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제4장 규정 】

제정안
제4장 치유의 숲 조성 등
제18조(치유의 숲 조성)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의 숲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치유의 숲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치유의 숲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유하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을 치유의

제정안

숲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의 숲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치유의 숲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의 숲으로 조성하려는 산림에 둘러싸인 토지 중 치유의 숲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치유의 숲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성하거나 승인된 치유의 숲조성계획에 포함된 토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치유의 숲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성하는 치유의 숲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의 숲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의 숲조성계획에 따라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산림청장이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치유의 숲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치유의 숲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

제정안

으로 보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3.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또는 변경인가·변경신고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또는 변경인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7.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제정안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치유의 숲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치유의 숲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치유의 숲조성계획의 승인(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치유의 숲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승인을 받은 자가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제정안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제18조제7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1조(치유의 숲의 타당성 평가)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평가(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치유의 숲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치유의 숲조성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치유의 숲조성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② 타당성 평가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치유의 숲 등록) ① 치유의 숲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치유의 숲을 운영하려는 자는 치유의 숲의 명칭·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숲 전문인력 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 등록

제정안

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치유의 숲의 등록 및 변경 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치유의 숲을 운영하는 자는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치유의 숲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치유의 숲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치유의 숲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그 밖에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5조(치유의 숲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치유의 숲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가. 치유의 숲 조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치유의 숲 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치유의 숲 타당성 평가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치유의 숲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 조성계획 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항 등의 의제,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치유의 숲 대상지 선정 시 적정 대상지 여부 평가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내용은 「산림휴양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이관한 것인데, 현행 「산림휴양법」의 조문은 산림욕장 등(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포함)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치유 부분인 ‘치유의 숲’을 구분하여 제정법으로 이관하고 제정안의 부칙에서 타법 개정을 통하여 관련 부분을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나. 치유의 숲 등록

안 제22조는 치유의 숲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갖추고 시설 운영을 위한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재 치유의 숲 위탁 규정은 있으나 운영·관리에 관한 등록 규정은 없는 상황임.

제정안은 유사한 시설인 유아숲체험원과 수목원의 경우 등록제도

를 운영 중이므로, 타당성평가 등 치유의 숲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조성된 치유의 숲에 대하여 조성 완료 후 운영을 위한 별도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치유의 숲이 효율적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원활한 산림치유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 입장료 등의 징수

안 제23조는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사용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되, 공립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산림휴양법」 제21조의5에서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징수 규정을 두고 있고,¹⁶⁾ 자연휴양림등에는 산림욕장등이 포함되며 산림욕장등에는 치유의 숲이 포함되므로,¹⁷⁾ 제정안은 「산림휴양법」의 규정을 이관한 것으로 이해됨.

16) 「산림휴양법」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7) 「산림휴양법」 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상지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타당성 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치유의 숲·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이하 “산림욕장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 치유의 숲에서의 금지행위, 치유의 숲의 위탁

안 제24조 및 제25조는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자의 금지행위로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사행위, 흡연행위 및 운영·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조성한 치유의 숲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제정안의 내용은 「산림휴양법」 제21조의6과 제22조에서 치유의 숲 해당 부분을 이관한 것인데,¹⁸⁾ 현행 「산림휴양법」은 위탁대상으로 법률에서 산림조합을 예시하고 있는 반면, 치유의 숲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예시하고 있는바, 향후 산림복지진흥원이 치유의 숲 운영위탁을 도맡아 할 것으로 예상됨.

18) 「산림휴양법」 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그 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5. 산림치유사

제정안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치유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림치유사의 업무와 배치에 관한 사항 및 산림치유사의 보수 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림치유사 제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제정안은 「산림휴양법」 제3장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제5장 규정 】

제정안
제5장 산림치유사
제26조(산림치유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산림치유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등급을 나눌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는 것 2. 제32조에 따른 산림치유사 양성기관에서 해당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3. 제2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산림치유사 등급별 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치유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치유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

제정안

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④ 산림치유사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27조(산림치유사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치유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이 법 또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

마. 「아동복지법」 제3조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범죄

사. 「노인복지법」 제1조의2의 노인학대 관련 범죄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정안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제28조(자격증의 발급) ① 산림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산림치유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산림치유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사 자격증 발급·재발급의 신청 및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치유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산림치유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9조(산림치유사의 업무) 산림치유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보급하고 지도하는 업무

2. 그 밖에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0조(산림치유사의 배치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산림치유시설에 산림치유사를 배치하는 경우 산림치유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제31조(사회서비스 등과 연계 제공)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산림치유서비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산림치유사 양성기관)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치유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양성과정, 교육설비 및 장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게 운영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양성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자료 요구 또는 현장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제정안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산림치유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산림치유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① 산림청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5.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산림치유사의 보수교육) ① 제29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치유사는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안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방법·내용·비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가. 현황

현재 「산림휴양법」 제3장은 산림치유지도사¹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칭을 산림치유사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이관하려는 것으로,

산림치유에 관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경우 기존의 산림치유지도사에 관한 사항은 동 제정안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지도사’는 강압적이고 주입식 전달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보다 친근한 접근을 위해 ‘산림치유사’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임.

나. 산림치유사 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는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치유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산림치유사의 결격사유와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19) 전문인력인 산림치유사는 ‘13년(36명 1급 22, 2급14)을 시작으로 ’24.9월 현재3,142명(1급 718, 2급 2,424명)이 양성되었음.

제정안이 이관하고자 하는 「산림휴양법」 제11조의2 규정은 자격 기준, 자격시험, 결격사유를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국가 자격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자격기준, 결격사유, 자격증 발급 조문을 분리하여 규정하는바, 이해하기 쉽고 일관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임.

특히, 산림청은 「산림휴양법」의 근거 없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시험 및 자격증 발급 업무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는바, 제정안 입법 시 해당 업무의 위탁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또한, 제정안은 「산림휴양법」상의 결격사유에 더하여 아동, 노인,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를 결격사유로 추가하고 있는데, 주요 산림치유 대상군에 아동과 노인이 포함됨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임.

다. 산림치유사의 업무, 산림치유사의 배치 등

안 제29조는 산림치유사의 업무를 ①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보급하고 지도하는 업무, ② 그 밖에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안 제30조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사를 배치하도록 하며, 산림치

유시설 운영자가 해당 시설에 산림치유사를 배치하는 경우 산림치유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현재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는 「산림휴양법」 제11조의2와 「산림휴양법 시행규칙」 제12조의2²⁰⁾에 따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관찰 등 체험프로그램, 보행·등산·체조 등 운동프로그램, 휴식·놀이 등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라. 사회서비스 등과 연계 제공

안 제31조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

20) 제12조의2(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범위)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4.>

1. 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관찰 등 체험프로그램
2. 보행·등산·체조 등 운동프로그램
3. 휴식·놀이 등 여가프로그램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런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²¹⁾

현재 치매안심센터 연계 노인 치매예방 및 향노화, 숲태교(임산부), 난임 우울증, 피해 아동·청소년, 질병관련 재활 등의 분야에서 산림치유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등이 활발하게 연계되고 있음.

이와 같이 산림치유서비스는 해당 분야에서 상담·재활·돌봄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그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제정안은 산림치유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등과의 연계 제공에 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활발하게 연계되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마. 산림치유사 양성기관

안 제32조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치유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치유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산림휴양법」 제11조의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²²⁾

21)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

바. 산림치유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안 제33조는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산림치유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산림치유사 명의의 사용 및 자격증의 대여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려는 것으로,

민간을 중심으로 유사 치유 행위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전문인력의 산림치유서비스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제정안은 현행 「산림휴양법」 제11조의5에서 규정하는 자격 취소 및 정지의 사유에 더하여 ‘산림치유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산림치유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산림치유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자격을 관리하려는 것임.

사. 산림치유사의 보수교육

안 제34조는 산림치유사로 하여금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22) 산림치유사 양성기관 지정 운영 : 17개 대학(1급 10개, 2급 15개 기관)
양성교육 : 1급 130시간, 2급 158시간, 수료기준 : 총 출석 80% 이상

현재 산림복지전문가²³⁾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²⁴⁾ 이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산림치유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해당 분야는 지속적으로 산림치유 효과에 대한 검증이 갱신되고 있고, 산림치유서비스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산림치유사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3) 숲해설가, 산림치유사,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24) 산림복지전문가 직무교육 실적 : '24(19천명) → '23(16천명) → '22(11천명)

6. 보칙

제정안은 보칙에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재정지원, 수수료,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안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 제정안 제6장 규정 】

제정안
제6장 보칙
제3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치유사나 산림치유사 양성기관이 아닌 자는 산림치유사, 산림치유사 양성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치유의 숲이 아니면 치유의 숲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6조(재정지원)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산림치유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이 법에 따른 산림치유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치유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제정안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사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제38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라 치유의 숲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32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33조에 따라 산림치유사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

제3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2. 제9조에 따른 산림치유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제10조에 따른 산림치유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 및 산림치유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
6. 제21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7.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치유사 자격시험 및 관련 업무
8.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제정안

9. 제34조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사 보수교육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5조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법인·단체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가. 유사명칭 사용금지

안 제35조는 산림치유사, 산림치유사 양성기관 또는 치유의 숲이 아닌 자 또는 시설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산림휴양법」에서 이들에 대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제정안은 치유 관련 수요 증가에 따라 민간을 중심으로 비전문가, 비전문시설 등 적법하지 않은 유사 치유 서비스가 제공될 우려에 대비하는 규정으로 이해됨.

유사입법례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과 관련하

여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²⁵⁾

나. 재정지원

안 제3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림치유산업 진흥을 위하여 제정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산림사업종합자금(융자)²⁶⁾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지원(취약계층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사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림휴양법」에서 이러한 재정지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인바, 제정안은 산림치유 활성화와 산림치유산업 진흥 기반 마련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됨.

참고로 유사입법례로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²⁷⁾

2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6)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자에 대해 일부 자금을 융자지원 하는 것임(1개소당 8억원 이내,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27)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다. 수수료

안 제37조는 산림치유사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제정안은 현행 「산림휴양법」 제31조의2의 내용을 이관하면서,²⁸⁾ 타 국가자격시험 사례와 같이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라. 청문

안 제38조는 제정법에 따른 치유의 숲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양성기관 지정 취소, 산림치유사 자격취소 및 정지에 대하여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현행 「산림휴양법」 제33조²⁹⁾의 내용을 이관하는 것으로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8) 「산림휴양법」 제31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29) 「산림휴양법」 33조(청문)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1의2. 제11조의5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4. 제21조의3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5. 제28조의5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로 이해됨.

마. 권한 등의 위임·위탁

안 제39조는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산림치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창업 지원, 치유의 숲 타당성 평가, 산림치유사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업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치유의 숲 타당성평가, 산림치유사 자격시험, 자격증 발급에 대한 업무는 현행 「산림휴양법」 제3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 시행하고 있고, 보수교육 업무에 대하여는 「산림복지법」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관리와 교육 훈련을 공공기관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는 바,

제정안은 이러한 규정을 이관하여 규정하면서, 제정법에서 추가되는 기초조사, 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등 추가 위탁 업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³⁰⁾

30)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제9조 정보체계구축, 제10조 산림치유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 제11조제1항 산림치유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제13조제1항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 및 산림치유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 제21조제1항 타당성 평가, 제26조제1항제3호 산림

바.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안 제40조는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게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임.

현행 「산림휴양법」에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조항은 없으나, 제정안에서는 위탁하는 공적 업무에 대하여 투명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의 목적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정안에서 위탁하는 공적 업무의 공공성이 수준이 이러한 의제 규정을 마련할 정도인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치유사 자격시험 및 관련 업무, 제28조제1항, 제2항 산림치유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제34조제1항 산림치유사 보수교육

7. 벌칙

제정안은 보칙의 장에서 형벌과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

【 제정안 제7장 규정 】

제정안
제7장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3.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람 제42조(과태료) ① 제3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한 산림치유프로그램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사람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산림치유사

제정안

- ③ 제24조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24조제2호·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가. 벌칙

안 제41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치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림치유사 명의도용이나 자격증을 대여 받거나 대여한 사람,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치유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현행 「산림휴양법」 제42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이관한 것으로 이해됨.³¹⁾

31) 「산림휴양법」 제42조(벌칙)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 5.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나. 과태료

안 제42조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우수산림치유프로그램의 유사 지정 표시를 사용한 자, 의무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산림치유사, 치유의 숲 내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임.

제정안은 현행 「산림휴양법」 제42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이관한 것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내용을 이관하면서,³²⁾ 제정법에서 추가된 우수산림치유프로그램 유사 지정 표시, 보수교육에 대한 위반 등을 과태료 부과사항에 추가한 것으로 이해됨.

문 의 처
02)6788-5423

32) 「산림휴양법」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③ 제2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1조의6제2호·제3호 및 제23조의5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참고 1

타 부처 치유와의 차별성

- 농진청(치유농업), 해수부(해양치유)는 개별 법령을 제정 추진하고 있음
산림치유, 치유농업, 해양치유 등 자연치유는 각각의 차별성이 있음.
- 산림치유와 치유농업, 해양치유는 활용 공간, 자원, 활동 내용에 있어서 차별화되며, 특히 **자원의 차별성**이 큼.

구분	산림치유	치유농업	해양치유
근거 법률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1.3.25 / 20.3.24. 제정)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1.2.19 / 20.2.18. 제정)
정의	심신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 등을 활용하는 활동 을 말한 다.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 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산업 을 말한다.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 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을 말한다.
공간& 자원	산림, 산림치유시설, 산림치유자원	치유농업시설	해양치유자원 및 해안가
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자원	피톤치드, 음이온, 경관 등 명시	-	갯벌, 소금, 해양기후 등 명시
전문가	산림치유사 1급 718명, 2급 2,424명	치유농업사 2급	준비중
양성 기관	17개 대학 25개 기관 (1급 10개, 2급 15개)	15개 기관	2개 기관

< 산림치유자원 조사, 산림치유프로그램 효과검증 >

□ (자원조사) 대내·외 산림치유자원 DB 구축을 위한 현장중심 연구

- 전국 주요 산림복지시설 주요숲길 산림치유자원 연구 수행(633회)
 - * 산림치유원(4지점, 320회), 대조군(2지점, 19회), 소속기관(14개소 각 3지점, 294회)
- 치유의숲 등 산림복지시설 조성관련 적정입지 타당성 평가·조사
 - '19년 1건(축령산·문수산) / '20년 2건(춘천, 부산 치유의숲)

□ (효과검증) 산림복지프로그램 효과성 향상 성과 모니터링

- 진흥원 중점사업 연계 산림복지시설 방문고객 특성별 효과 모니터링 추진
 - 통시적 관점의 효과검증 데이터 축적을 위한 공통·선택형 지표 적용
 - * '18년(특수직군형, 6건), '19년(생애주기형, 13건), '20년(사회문제해결형, 11건), '21년(특수직군, 단위프로그램 중심, 27건), '22년(부처간 협력사업, 회기형 프로그램 중심)
- 근거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 효과성 조사·연구 구체화
 - 프로그램 개발 안내서 제공으로 최적 효과요인 제시, 우수작 추적관리(향후 3년)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분야 현장기술지원 컨설팅 신규 도입

< 산림치유 관련 기술의 사업화 >

□ (사업화 지원) 산림치유자원 활용 공동연구 및 연구기술 지원

- 산림치유자원(피톤치드) 분석체계 공동연구 및 의료기관 대상 자문 수행
 - 피톤치드 분석 매뉴얼 정립을 위한 교차분석 실험연구 추진
 - * (실험1) 피톤치드 물질별 최저 검출농도를 구하기 위한 검출한계 실험
 - * (실험2) 산림치유원 잣나무숲 피톤치드 포집을 통한 실험실간 재현성 평가
 - 강북삼성병원(의료기관) 대상 질환자 맞춤형 치유환경 적용을 위한 연구 지원
 - 이대목동병원(의료기관) VR 활용 가상 산림치유환경 구현 연구 지원

□ (R&D) 산림치유자원 현장측정·분석 기술 혁신

- 지능형 산림환경·치유물질 탐지 측정센서 및 분석기술 개발
- 민간기업 설문지 컨설팅을 통한 문항 재구성 및 치유자원 평가 기준 수정

〈 산림치유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

□ (치매 예방) 경도인지장애 대상 효과검증 표준조사표 및 바이오마커 발굴

- 치매안심센터 연계 산림치유프로그램 활용 가능성·효과성 지속 관찰
 - 인지기능 개선 산림치유프로그램 연구대상자(실험군·대조군) 추적조사
 - * 4차례 반복 운영(실험군 19명, 대조군 19명)을 통한 검증지표 적용 패널연구
- 표준조사표 현장 적용 및 치매 관련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제작
 - 표준조사표 일반형(학술보고서 형태), 단축형(핸드북 형태) 제작
 - * 인지기능, 정서상태, 신체활동, 신체건강 등 일반형 54문항, 단축형 25문항
 -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군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제작

□ (치유 음식) 임산물 활용 산림치유음식 개발 및 현장 적용방안 연구

- (프로그램)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식치+산림복지 특화 서비스 개발·운영
 - 산림생태텃밭과 연계한 산림치유음식 체험형 프로그램 9건 개발·시범운영
 - * (프로그램) 다도, 탄소중립 등과 연계한 치유음식 프로그램 / (국가인증) 환경부 등 3건
 - 건강한 食문화 전파를 위한 비대면 치유음식 만들기 행사 2회 추진
 - * (수혜인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 6,828명 / (진행메뉴) 레시피 공모전 수상작 8종
- (레시피 개발) 연구사업 및 대국민 공모 추진을 통한 산림치유음식 개발
 - 국민과 함께 임산물 및 건강한 조리법 활용한 산림치유음식 개발
 - * (개발건수) 우수레시피 90종 선정 / (공모유형) 치유도시락, 치유밥상, 치유일품식, 치유간식
 - 임산물 기반의 치유음식 레시피 개발 및 건강기능성(항산화 활성 능력) 검증
 - * (치유식단) 총 38종 개발 / 계절별 치유식단 8종, 표준화 식단 10종, 단품메뉴 20종

□ 산림치유자원 연구 및 우수 치유자원 활용 컨설팅 추진

- 산림복지전문업 대상 산림치유자원 연구 및 자원 활용 컨설팅
 - 산림치유자원 조사·분석 및 우수치유자원 활용 컨설팅, 만족도 조사
 - * '20년 1건(드림숲) / '21년 1건(부산생명의숲) / '22년 2건(해든숲, 함께하는숲)
- 소속기관 산림치유자원 측정 및 대상별 산림치유프로그램 컨설팅
 - 주요 대상별 산림치유자원 활용 프로그램 컨설팅 및 효과성 검증
 - * '20년 3건(프로그램 전·후 효과 19.48%↑) / '21년 5건(프로그램 전·후 54.48%↑)

참고 3

치유의 숲 조성·운영 현황(2024년 10월 기준)

□ 총괄표

구분	계	운영	조성		
			소계	조성중	조성완료
계	83	54	29	24	5
국립	15	12	3	2	1
공립	64	40	24	20	4
사립	4	2	2	2	-

□ 운영 54개소(국립 12, 공립 40, 사립 2)

구분	지역	위치	조성기간	총사업비 (국비)	면적 (ha)	운영형태
국립 (12)	경기 (2)	산음 치유의 숲 (경기 양평)	'07~'08	14억원(14억)	55	운영중
		양평 치유의 숲 (경기 양평)	'13~'16	50억원(50억)	623	운영중
	강원 (2)	청태산 치유의 숲 (강원 횡성)	'09~'10	21억원(21억)	402	운영중
		대관령 치유의 숲 (강원 강릉)	'11~'15	94억원(94억)	224	운영중
	충북 (1)	제천 치유의 숲 (충북 제천)	'15~'18	50억원(50억)	57	운영중
	충남 (1)	예산 치유의 숲 (충남 예산)	'15~'18	50억원(50억)	140	운영중
	경북 (1)	김천 치유의 숲 (경북 김천)	'15~'18	50억원(50억)	50	운영중
	전남 (3)	장성 치유의 숲 (전남 장성)	'09~'10	21억원(21억)	258	운영중
		곡성 치유의 숲 (전남 곡성)	'15~'18	50억원(50억)	69	운영중
		화순 치유의 숲(전남 화순)	'19~'22	75억원(75억)	60	운영중
	울산 (1)	대운산 치유의 숲 (울산 울주)	'13~'17	50억원(50억)	185	운영중
	부산 (1)	부산 치유의 숲 (부산 사하구)	'20~'22	75억원(75억)	62	운영중
공립 (40)	서울 (1)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경기 과천)	'17~'23	48억원(245억)	50	운영중
	부산 (1)	부산 치유의 숲(부산 기장군)	'15~'17	31억원(155억)	153	운영중

구분	지역	위치	조성기간	총사업비 (국비)	면적 (ha)	운영형태
	대구 (2)	비슬산 치유의숲 (대구 달성군)	'14~'16	30억(15억)	82	운영중
		최정산 치유의 숲 (대구 달성군)	'20~'23	31억(-)	30	조성완료
	대전 (1)	무수동 치유의 숲 (대전 중구)	'16~'20	125억원(425억)	172	임시운영
	경기 (4)	하늘아래 치유의 숲 (경기 포천)	'13~'15	66억원(21억)	52	운영중
		잣향기 푸른숲 (경기 가평)	'09~'14	26억원(7억)	153	운영중
		양평 치유의 숲 (경기 양평)	'14~'16	40억원(14억)	100	운영중
		동두천 치유의 숲 (경기 동두천)	'18~'21	40억원(19억)	50	운영중
	강원 (2)	망경대산 치유의숲(강원 영월)	'13~'16	21억원(10.5억)	55	운영중
		삼척 활기 치유의숲(강원 삼척)	'17~'20	50억원(25억)	68	운영중
	충북 (6)	민주지산 치유의 숲 (충북 영동)	'11~'15	32억원(15억)	61	운영중
		계명산 치유의숲 (충북 충주)	'13~'16	48억원(24억)	68	운영중
		장령산 치유의숲 (충북 옥천)	'14~'15	15억원(7.5억)	50	운영중
		생거진천 치유의숲 (충북 진천)	'15~'20	62억원(25억)	56	운영중
		성불산 치유의숲 (충북 괴산)	'18~'21	50억원(10.5억)	50	운영중
		소선암 치유의숲 (충북 단양)	'19~'23	50억원(1.5억)	50.1	운영중
	충남 (4)	서천 치유의 숲 (충남 서천)	'17~'20	50억원(25억)	65	운영중
		태학산 치유의 숲 (충남 천안)	'16~'21	50억원(15.5억)	55	운영중
		향적산 치유의 숲 (충남 계룡)	'17~'21	50억원(11.5억)	50	임시운영
		주미산 치유의 숲 (충남 공주)	'18~'21	50억원(2.5억)	53	운영중
	전북 (2)	그린장수 치유의 숲 (전북 장수)	'17~'21	50억원(14억)	50	운영중
		위도 치유의 숲 (전북 부안)	'18~'21	50억원(13억)	42	운영중
	전남 (8)	장흥편백 치유의 숲 (전남 장흥)	'10~'14	45억원(22억원)	180	운영중
		만연산 치유의 숲 (전남 화순)	'11~'15	118억원(39억원)	120	운영중
		백운산 치유의 숲 (전남 광양)	'12~'17	100억원(50억원)	55	운영중
		팔영산 치유의 숲 (전남 고흥)	'13~'17	280억원(140억원)	100	운영중
		전남 빗가람 치유의 숲 (전남 나주)	'13~'16	50억원(25억원)	55	운영중

구분	지역	위치	조성기간	총사업비 (국비)	면적 (ha)	운영형태
		흑석산 치유의 숲 (전남 해남)	'13~'19	38억원(19억원)	50	운영중
		완도 치유의 숲 (전남 완도)	'16~'21	61억원(29억원)	60	운영중
		무안 치유의 숲 (전남 무안)	'16~'21	80억원(40억원)	125	운영중
	경북 (2)	내연산 치유의 숲 (경북 포항)	'14~'20	46억원(23억)	56	운영중
		경산 치유의 숲 (경북 경산)	'19~'23	50억원(2억)	90	운영중
	경남 (6)	오도산 치유의 숲 (경남 합천)	'12~'16	48억원(24억원)	60	운영중
		창원편백 치유의 숲 (경남 창원)	'13~'16	46억원(23억원)	58	운영중
		대봉산 치유의 숲 (경남 함양)	'13~'16	50억원(25억원)	65	운영중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경남 거창)	'14~'19	48억원(24억원)	50	운영중
		산청 치유의 숲 (경남 산청)	'16~'21	50억원(25억)	55	운영중
		하동 치유의 숲 (경남 하동)	'19~'23	52억원(2억)	50	운영중
	제주 (1)	서귀포 치유의 숲 (제주 서귀포)	'12~'16	50억원(25억)	174	운영중
사립 (2)	강원 (2)	힐리언스 선마을 치유의숲(강원 홍천)	'14~'17	96억원	75	운영중
		로미지안 치유의숲(강원 정선)	'20~'21	168억원	32	운영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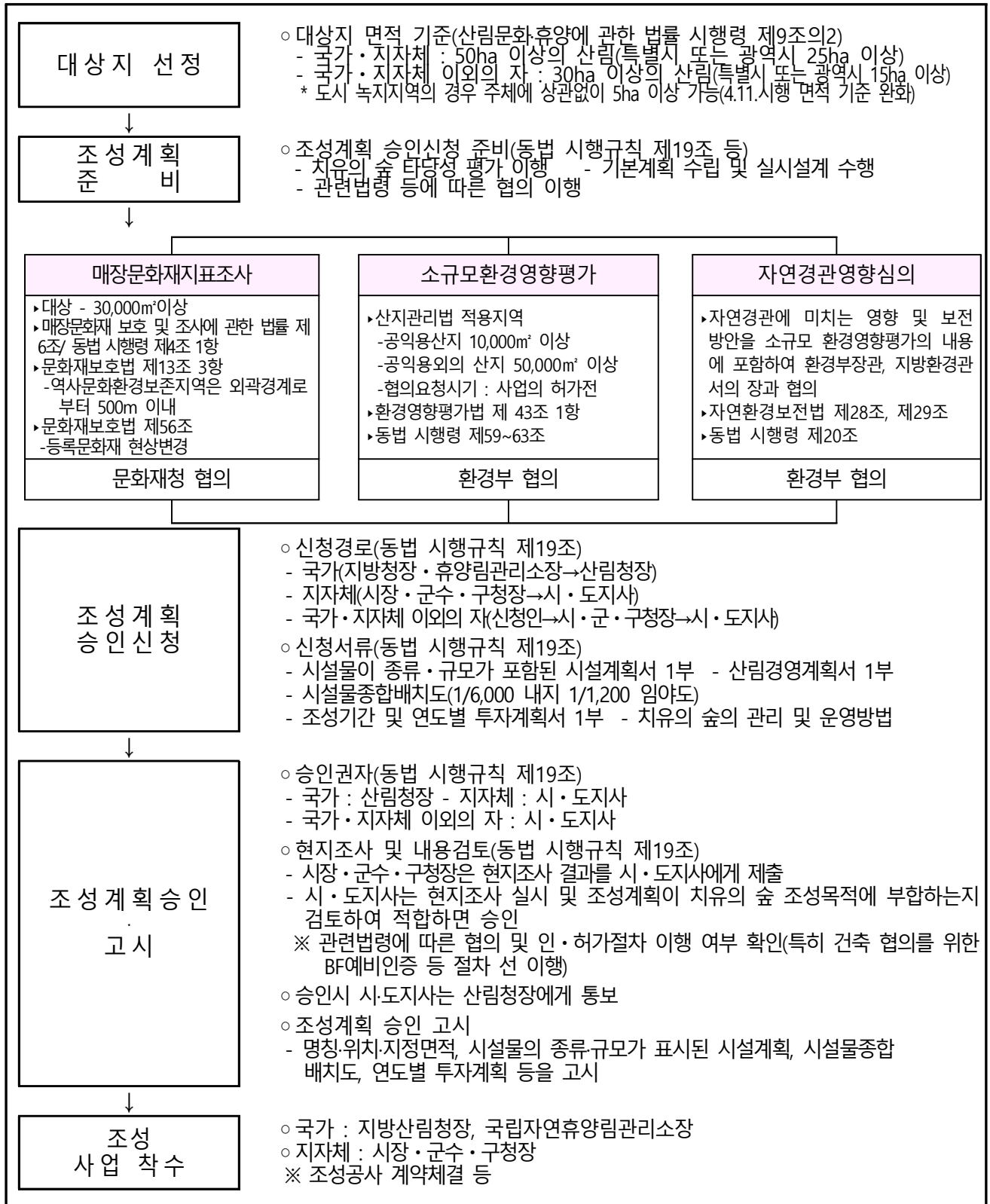
□ 조성 29개소(국립 3, 공립 24, 사립 2)

구분	지역	위치	조성기간	총사업비 (국비)	면적 (ha)	사업추진
국립 (3)	대구 (1)	대구 치유의 숲 (대구 달서구)	'24~'27	125억원(125억)	5	조성중
	울산 (1)	울산 치유의 숲 (울산 남구)	'24~'27	125억원(125억)	5	조성중
	전북 (1)	익산 치유의 숲 (전북 익산)	'21~'23	75억원(75억)	62	조성완료
공립 (24)	인천 (1)	인천대공원 치유의 숲 (인천 남동구)	'19~'23	48억원(2억)	53	조성중
	강원 (4)	태백 매봉산 치유의 숲(강원 태백)	'20~'23	105억원(-)	55	조성중
		평창 치유의 숲 (강원 평창)	'21~'24	50억원(-)	51	조성중
		양구 치유의 숲 (강원 양구)	'23~'26	50억원(-)	59.9	조성중

구분	지역	위치	조성기간	총사업비 (국비)	면적 (ha)	사업추진
	충북 (2)	갯골 치유의 숲 (강원 인제)	'23~'26	50억원(-)	52.3	조성중
		맹동 치유의 숲 (충북 음성)	'20~'24	50억원(-)	60	조성중
		옥화 치유의 숲 (충북 청주)	'21~'24	50억원(-)	50	조성중
	전북 (2)	용결산치유의 숲 (전북 순창)	'11~'15	245억원(12억)	67	조성완료
		정읍 치유의 숲 (전북 정읍)	'23~'26	50억원(-)	52	조성중
	전남 (4)	용계산 치유의 숲 (전남 순천)	'20~'23	50억원(-)	75.3	조성중
		완도 치유의 숲 (전남 완도)	'24~'26	30억원(-)	55	조성중
		신안 치유의 숲 (전남 신안)	'22~'25	70억원 (녹색자금)	15	조성중
		신안 자은 치유의 숲 (전남 신안)	'22~'25	50억원(-)	12.7	조성중
	경북 (6)	보현산 치유의 숲 (경북 영천)	'24~'26	50억원(-)	50	조성중
		비데산 치유의 숲 (경북 영덕)	'24~'28	50억원(-)	50	조성중
		산림치유 힐링센터(경북 청도)	'24~'26	80억원(-)	60	조성중
		성주 치유의 숲(경북 성주)	'24~'26	55억원(-)	93.1	조성중
		백암 치유의 숲 (경북 울진)	'17~'23	50억원(10.5억)	56	조성중
		구미 치유의 숲 (경북 구미)	'22~'25	70억원 (녹색자금)	50	조성중
	경남 (5)	거제 치유의 숲 (경남 거제)	'19~'2	50억원(3억)	56	조성중
		망운산 치유의 숲 (경남 남해)	'24~'26	50억원(-)	50.8	조성중
		밀양 치유의 숲 (경남 밀양)	'21~'24	50억원(-)	53	조성중
		진주 치유의 숲 (경남 진주)	'20~'23	50억원(-)	50	조성중
		창녕 화왕산 치유의 숲 (경남 창녕)	'20~'24	50억원(-)	86	조성중
사립 (2)	경기 (1)	화담 치유의 숲 (경기 광주)	'19~'26	113억	84	조성중
	강원 (1)	느란마을 음악 치유의숲(강원 평창)	'18~'24	20억원	35	조성중

참고 4

치유의 숲 조성 추진절차



참고 5

치유의 숲 방문객 및 프로그램 이용자 수(2023년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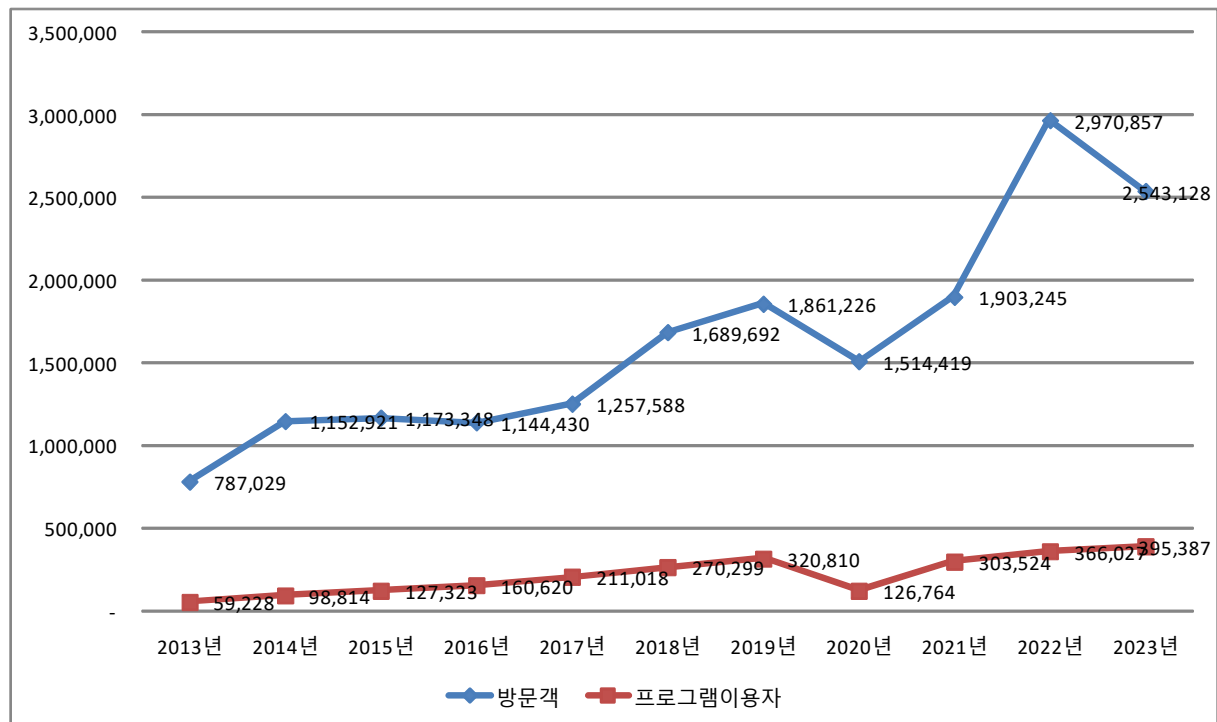
□ 치유의 숲 등 방문객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합계(천명)	158	315	787	1,153	1,173	1,144	1,258	1,690	1,861	1,514	1,898	2,970	2,543
증가율(%)	107	100	150	46	1.8	-2.5	9.9	34.4	10.2	-18.6	25.4	156	-14.4

□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용자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합계(명)	11,327	31,215	59,228	98,814	127,323	160,620	211,018	270,299	320,810	126,764	303,524	366,027	395,387
증가율(%)	270	176	90	67	28.9	26.2	31.4	28.1	18.7	-60.5	139.4	120.6	108.0

□ 방문객 및 프로그램 이용자 연도별 분포표



참고 6

전문인력 (산림치유사 및 산림복지전문업)

< 산림치유사 >

□ 전문인력 명칭 변경

- 산림휴양법(산림치유지도사) → 산림치유법(산림치유사)
 - ‘지도사’란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타인을 가르쳐 이끌고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단어에서 강압적·주입식 전달을 내포하여 국민에게 보다 친근한 접근을 위해 ‘산림치유사’ 명칭으로 변경 추진
 - * 유사사례 ‘미술치료사, 작업치료사, 음악치료사’

□ 자격기준 구분(1급, 2급)

산림, 보건, 의료, 간호 등 관련학과 졸업 또는 관련 업무 경력

□ 양성교육 (양성기관 25개 : 1급 10개, 2급 15개)

산림청 지정 양성교육 기관 교육 이수(1급 130시간, 2급 158시간)

□ 자격시험 (연 1회 시행)

전문인력 : '24.9월말 기준 3,142명(1급 718명, 2급 2,424명)

< 산림복지전문업 >

□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을 영업 수단으로 하는 업

- 산림복지전문업 중 산림치유 관련(종합산림복지업, 산림치유업) 등록현황

사업유형	등록기준		등록현황 (’24.9월)
	기술인력(자격요건)	시설	
종합산림복지업	-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1급 1명 이상 포함) - 산림교육전문가 5명 이상	사무실	69건 (746명)
산림치유업	-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1급 1명 이상 포함)		128건 (277명)

참고 7

지역별 산림치유분야 전문업 등록 현황(2024년 9월말)

□ 전문업 등록 총괄

구분	합 계	종합산림복지업	산림치유업
전문업 등록 수(건)	197	69	128

구분	계	종합산림	산림치유업
합 계	197	69	128
서울	29	15	14
부산	7	1	6
대구	3	1	2
인천	2	-	2
광주	3	2	1
대전	8	3	5
울산	5	1	4
세종	4	2	2
경기	31	14	17
강원	21	6	15
충북	13	2	11
충남	10	2	8
전북	8	6	2
전남	20	6	14
경북	11	2	9
경남	17	4	13
제주	5	2	3

참고 8

산림치유사 양성기관

□ 산림치유사 양성기관 : 17개 대학 25개 기관 (1급 10, 2급 15)

연번	지역	기관명	등급	주소	연락처
1	서울	서울대학교(평생교육원)	1급 2급	서울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152-1동 307호)	02-880-9804
2		국민대학교(평생교육원)	2급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정릉동)	02-910-5196
3	경기	가톨릭대학교(평생교육원)	1급 2급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역곡동)	02-2164-6587
4	강원	한림성심대학교(평생교육원)	2급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길 48	033-240-9490
5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1급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효자동)	033-250-8397
6		가톨릭관동대학교	1급 2급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033-649-7572
7	대전	충남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1급 2급	대전 유성구 대학로 99	042-821-7834
8	충북	충북대학교(평생교육원)	1급 2급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51	043-261-2075
9	광주	광주보건대학교(평생교육원)	2급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419번길 73 (신창동)	062-958-7757
10		전남대학교(평생교육원)	1급	광주 북구 용봉로 77 (용봉동)	062-530-0775
11	전북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1급 2급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063-219-5394
12	전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2급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번지	061-750-5076
13	경북	동양대학교(평생교육원)	2급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로 145	054-630-1800
14		대구한의대학교(평생교육원)	1급 2급	경북 경산시 한의대로 1	053-819-7701
15	경남	인제대학교(미래교육원)	2급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055-320-3484
16		경상국립대학교 (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	1급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가좌동)	055-772-1835
		경상국립대학교(평생교육원)	2급	경남 진주시 동진로 33 (칠암동)	055-751-3529
17	제주	제주한라대학교 (지역사회간호센터)	2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라대학로 88	064-741-7476

참고 9

산림치유사 자격 취득 절차

□ 자격증 취득 관련 절차

담당업무	○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도활동
양성과정	1. 자격기준 ○ 1급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산림관련 학과의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등 ○ 2급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산림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등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참고 2. 양성교육 :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1급은 130시간(18과목), 2급의 경우 158시간(선택과목 포함 24과목) 3. 검증평가 : 양성기관에서 교육 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각 과정별 검증평가 실시
자격증 발급절차	<pre> graph LR A[교육 (양성기관)] --> B[평가 (한국산림 복지진흥원)] B --> C[이수증명서 발급 (양성기관)] C --> D[자격신청 (개인)] D --> E[검토·교부 (한국산림 복지진흥원)] </pre>
자격증 심사기준	○ 산림치유사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산림치유 관련 경력 ○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등) 자격증 및 관련 경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사, 기사 자격증 ○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양성과정 수료여부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검증평가 통과여부
신청서류	○ 신청서,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수증명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등급	자격기준
1급 산림치유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2급 산림치유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이하 "산림치유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u>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학위</u>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급 산림치유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u>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사학위</u>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u>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전문학사학위</u>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산림치유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비고

위 표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학과의 범위 등 산림치유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 11

산림치유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계열	세부 계열	관 련 학 과 명
산림 (49)	산림 자원	산림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산림과학과, 산림 환경자원학과, 생태환경보전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환경임산학과, 환 경생태공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학과, 환경재료과학과, 산림 치유학과, 산림비즈니스학과, 산림환경과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산림자원학 및 조경학 전공, 산림소재공학전공,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임산가공학과,
	원예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원예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원예육종학과, 원 예 화훼학과, 화훼원예학과, 원예치료학과, 원예생명과학과, 원예생명조 경학과
	조경	조경학과, 환경조경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플라워조경디자인과, 녹지 조경학과, 녹지환경계획과, 산림조경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도시환경 조경과, 전통조경학과
	기타	식물의학과, 식물자원응용공학과, 식물자원학과, 식물자원환경학과, 농생 물학과, 식물시스템과학과, 녹색기술융합학과
의료 (16)	의학	의예과, 의학과
	한의학	한의학과, 한의예과, 한약학과, 생약자원개발학과, 한약재산업학과, 한약 자원학과, 자연약재과학과, 한약자원개발학과, 생약자원학과, 한방건강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바이오제약산업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약학	약학과
보건 (19)	보건	보건학과, 공중보건학과, 건강관리학과, 보건건강관리과, 보건관리학과, 건강증진학과, 보건환경과, 보건환경과학과, 보건의료관리학과, 융합보건학과
	기타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대체의학과, 대체치유학과, 응급구조학과, 재활보건관리과, 의생명과학과, 재활과
간호(1)		간호학과

※ 비교 : 석사 이상의 학위에 대하여는 세부전공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세부전공을 한 학과 명칭이 관련학과 명칭과 동일할 경우 관련학과 학위로 인정한다.

계열	연 관 과 목 명
산림 (45)	산림휴양학, 산림치유학, 임산생명공학개론, (산림)생태학, (환경·산림)토양학, 목재화학, 원예치료학, 산림보호학, 산림자원측정학, 산림자원학, 산림경제학, 산림정책학, 산림경영학, 수목학, 조림학, (수목·식물·작물·재배식물)생리학, 조경관리학, 조경학개론, 임학개론, 산림과학개론, 원예학, (원예·식용·특용)작물학, 재배학, 조경수목, 산림환경보전, 조원식물학, 자원식물학, 산림치유인자, 수목병리, 수목해충, 조경수목관리학, 건강과도시원예, (조경)식물학, 식물생태학, 숲과건강, 야외휴양학, 생태조경학, 생태조경관리학, 임업경제학, 숲과인간, 산림자원정책학, 숲치유계획 및 활동론, 숲치유론 및 실습, 식물과학
보건·의료 (32)	(공중·정신·도시)보건학, (인체·운동·해부·임상)생리학, (인체)병리학, (인체·기능·인체기능·체육)해부학, (인체)면역학, (한방)약리학, 정신의학, 예방의학, (식이·한약·약선)본초학, 약용자원학, 약용식물학, 보건교육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통계학, 스포츠의학, 운동처방론, 운동치료학, 체육의기초해부생리, 식약용생물학, 대체의학론, 건강증진기획, 건강행동이론의 이해와 적용, 건강증진론, 생명보건통계학, 생약재배학, 약초와건강, 환경심리행태론, 건강행동이론, 건강증진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 비고 :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과목명에 ‘학’, ‘~(개,원,범,본,특)론’, ‘일반’, ‘기초’, ‘임상’, ‘고급’, ‘최신’, ‘응용’, ‘실(협,습,무)’, ‘연(습,구)’, ‘세미나’, ‘과제’ 등이 붙는 경우 동일교과목으로 본다.

□ 관련학과 등 지정 절차

- 지정 시기 : 산림청장이 필요로 할 때, 심의계획 공고
- 신청 주체 :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 신청
- 심의 절차

